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1외 소재 토지

NC2017-0215-0010

2017-02-22

(주)하나자산신탁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 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

전화:031)238-5600 전송:031)231-1841



(토지)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재호  (인)

(주) 나라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현태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이십억삼천이백삼십육만원정 (\2,032,360,000.-)		
-------	----------------------------------	--	--

의뢰인	(주)하나자산신탁	감정평가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주)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또는 대상업체명	(주)하나자산신탁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 표시 근거	귀의뢰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7.02.17	2017.02.17	2017.02.22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619	토지	4,619	440,000	2,032,360,000
		이		여	백	
	합계					\2,032,36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시  (인)

Appraisal Summary

1. 감정평가의 대상물건

소재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1외		
물건종류	토지	건물구조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답
개별공시지가	@160,000/㎡, @158,500/㎡	도로조건	맹지

2. 감정평가액

구분	사정면적(㎡)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동화리 187-1외	4,619	440,000	2,032,360,000	

3. 시세분석 자료

용도지역	주위환경	시세수준(원/㎡)	비고
자연녹지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400,000 ~ 600,000	실거래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

4. 임대현황

임대 현황	임대보증금	-	월 임차료	-
참고 및 유의사항	임대관계 이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와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하나 자산신탁에 공매 목적으로 의뢰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3.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 조건 없음.

4. 감정평가방법

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으로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17년 02월 17일자 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실시조사·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조사 착수일은 2017년 02월 17일자이고, 가격조사 완료일은 2017년 02월 17일자로 공부를 기준으로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물적 동일성 등 종합의견

물적 동일성	제반 현황으로 보아 물적 동일성 인정됨.
안정성, 환가성, 시장성, 주위환경 및 관리시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본건의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시장성 및 안정성, 환가성은 보통시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물건명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1외 소재 토지
-----	--------------------------

토지	기호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개별지가 (2016)
	1	동화리 187-1	답	2,146	답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평지	160,000
	2	동화리 231	전	2,473	답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평지	158,500
	합 계			4,619					

건물	기호	구조	연면적 (㎡)	용도	층수	사용승인일자
	합 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대상부동산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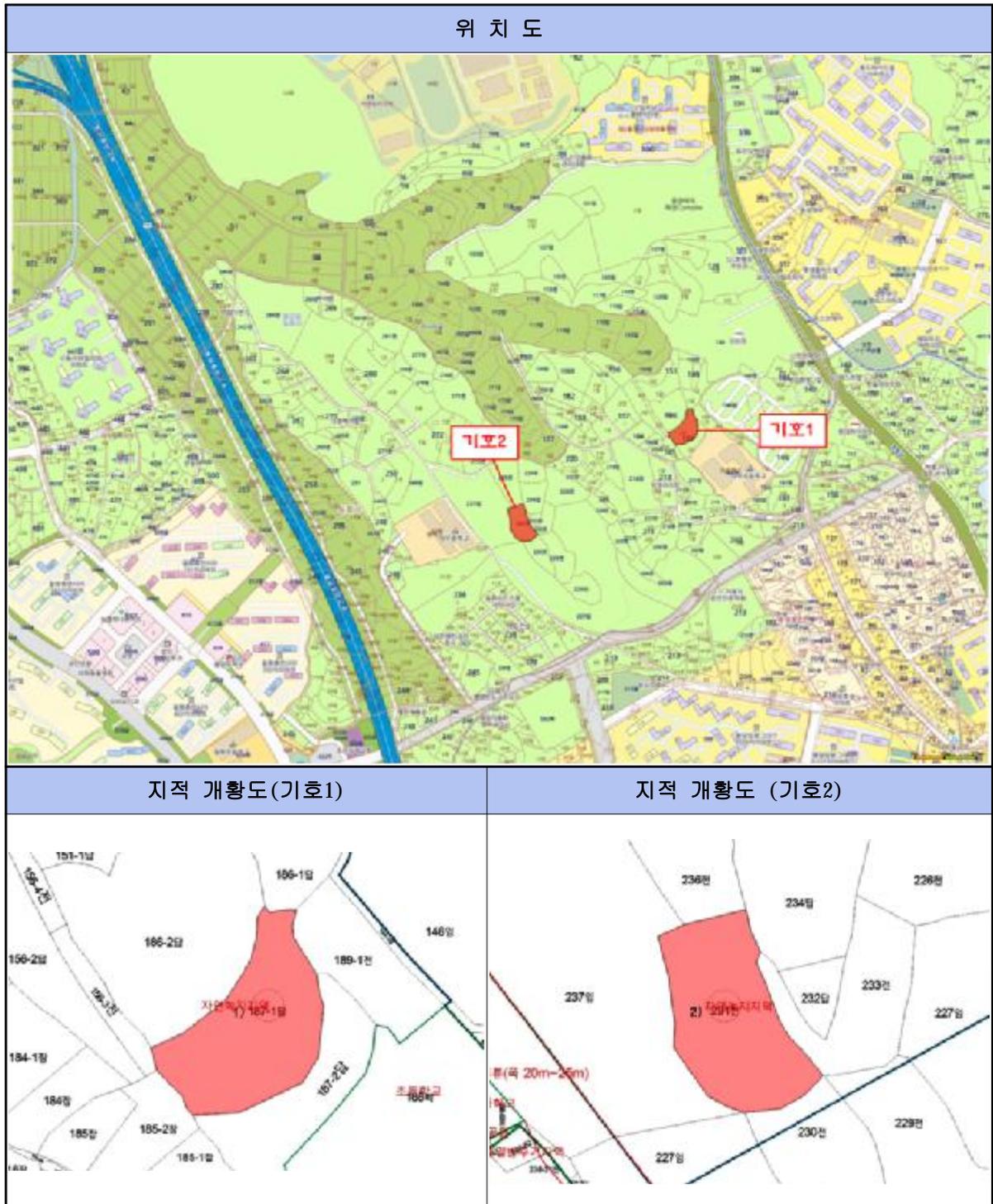
1. 입지현황

기재항목	기재사항
지리적 위치	본건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와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함.
간선도로 상황	본건 맹지이며, 인근으로 봉담지구 등 위치하여 간선도로 상황 대체로 무난한 편임.
전철역과의 거리	-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본건 인근 도보 10분거리 이내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는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무난한 편임.
주위 환경	인근은 전, 답 등 농경지 및 중.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도심근교 개발예정지대로서, 본건 일대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지역임.

2. 토지현황

기재항목	기재사항
형태	부정형 평지임.
이용상황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도로상태	맹지임.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기호1,2)공히,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동화지구),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도시개발구역(동화지구), 성장관리권역, 상대정화구역임.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기타 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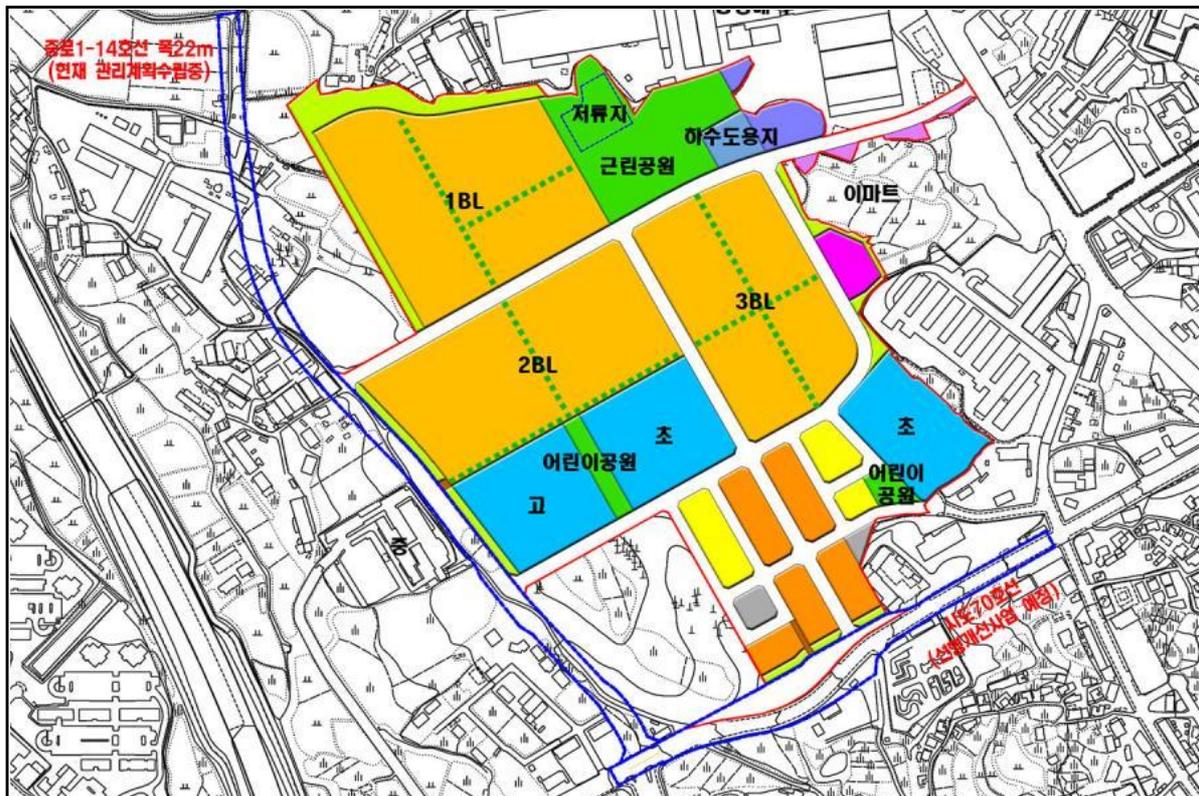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봉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개요

사업명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위치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 일원
사업규모	299,475㎡
사업기간	2015년 ~ 2020년(환지처분(예정)일)
사업시행자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인구계획	2,345세대(6,969인)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156,871㎡, 기반시설용지: 133,969㎡, 기타시설용지: 8,635㎡
비고	화성시 공고 제2016-2079호(2016.07.12)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공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합 계	282,321	100.0	299,475	100.0	증) 17,154㎡	
주택 용지	소 계	156,791	55.5	156,871	52.3	
	단독주택	-	-	8,158	2.7	신 설
	연립주택	9,911	3.5	-	-	폐 지
	아 파 트	138,676	49.1	132,423	44.2	
	준주거용지	8,204	2.9	16,290	5.4	
기반 시설	소 계	120,636	42.8	133,969	44.8	
	공 원	24,079	8.5	24,709	8.3	
	녹 지	15,495	5.5	15,212	5.1	
	공공공지	388	0.1	-	-	폐 지
	교육시설	41,037	14.6	44,810	15.0	유치원, 중학교 폐지, 고등학교 편입
	주 차 장	1,767	0.6	2,194	0.7	1개소 신설
	보행자도로	249	0.1	362	0.1	
	도 로	37,621	13.4	44,182	14.8	
	하수도용지	-	-	2,500	0.8	신 설
	저류지	-	-	(3,388)	(1.1)	신 설(중복결정)
기타 시설	소 계	4,894	1.7	8,635	2.9	
	시 장	1,519	0.5	1,519	0.5	
	동양매직	3,375	1.2	4,162	1.4	
	종 교	-	-	2,954	1.0	신 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가액 산출

i.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2.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선정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화성시 봉담읍>

(공시기준일 : 2016.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가	동화리 151-1	3,114	답	답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0,000
#나	동화리 184-1	1,521	공장 용지	공업용	자연녹지	세로(가)	사다리 평지	42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호 # 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함.

3. 시점수정

(화성시 녹지지역)

기 간	2016.01.01 ~ 2017.02.17
최종누적률 / 최종월지가변동률	2016.01.01 ~ 2016.12.31 : 1.631 2016.12.01 ~ 2016.12.31 : 0.265
계산식	$(1+0.01631) \times (1+0.00265 \times 48/31) \approx 1.02048$
지가변동률	2.048 (1.02048)
비 고	2016년 12월 지가변동률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의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의 비교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부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 시설, 인근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 인근 토지와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변전소, 상·하수도, 도시가스, 가스탱크, 오수 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맹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 획지, 3면 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 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나. 개별요인 비교

구분	비교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 2	#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제요인 대체로 유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 36538,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자료

1)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단 가 (원/㎡)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건물			토지+건물	토지		
A	안녕동 188-28	답	3,379	자연녹지 (답)	-	287,000	970,000,000	2016. 04. 22
		건물	-					
공장지대 위치하는 자연녹지 맹지 답								

2)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평가단가	토지평가액(원)	평가목적
		건물					기준시점
#1	동화리 287-8	전	-	자연녹지 (답)	388,000	수원-광명 고속도로건설공사	보상
		건물	-				2015. 03. 10
#2	동화리 77	답	2,836	자연녹지 (답)	249,000	706,164,000 (사업지구外)	경매
		건물	-				2016. 06
#3	동화리 269-1	답	1,511	자연녹지 (답)	273,000	412,503,000 (사업지구外)	담보
		건물	-				2016. 06
#4	동화리 238-10	대	794	자연녹지 (어린이집)	770,000	611,380,000	담보
		건물	-				2016. 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주위환경	시세수준(원/㎡)	비 고
자연녹지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400,000 ~ 600,000	실거래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

4) 인근 경매통계자료

경기 화성시 2016년 02월 ~ 2017년 01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주택	26,003,330,919	19,814,893,225	76.2 %	113	50	44.2 %	
집합건물	56,797,436,230	47,761,427,183	84.1 %	516	248	48.1 %	
상가	38,428,192,400	28,757,169,959	74.8 %	224	62	27.7 %	
공장	300,238,061,135	212,580,290,756	70.8 %	274	106	38.7 %	
특수부동산	59,721,254,030	41,735,241,000	69.9 %	61	17	27.9 %	
토지	167,624,956,480	110,179,576,897	65.7 %	1,124	412	36.7 %	
기타토지	2,430,778,028	1,555,331,110	64 %	49	9	18.4 %	
차량외 기타	2,042,630,000	1,544,498,401	75.6 %	114	51	44.7 %	
합 계	653,286,639,222	463,928,428,531	71 %	2,475	955	38.6 %	

다. 보정치 산정

1) 산식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액}}{\text{시점수정된 표준지공시지가}} = \frac{\text{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2) 사례선정

선정 사례	평가 사례 #1
선정 의견	상기 인근 사례 중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비교표준지와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표준지의 격차율 산정

구분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표준지가액(원/㎡)	격차율
평가사례 #1	388,000	1.00	1.03545	1.00	1.105	443,939	2.72
표준지 #가	160,000	1.00	1.02048	1.00	1.000	163,277	
사정보정	별도 보정요인 없음.						
시점수정	(화성시 녹지지역) 2015.03.10 ~ 2017.02.17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0.85	1.00	1.00	1.00	1.30	1.00	1.105
표준지는 맹지로서, 세로(가)인 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 열세이나, 표준지 일대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상태로서, 사업진행의 정도 등으로 보아 장래동향 등 기타조건 비교표준지가 우세함.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2.70
결정 의견	상기에서 산정한 격차율과 본건 인근의 지가수준,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정하였음.

7.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가. 토지단가 산정

기호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원/㎡)	적용단가(원/㎡)
1	160,000	1.02048	1.00	1.000	2.70	440,847	440,000
2	160,000	1.02048	1.00	1.000	2.70	440,847	44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공부면적(㎡)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토지가액	비고
1	2,146	2,146	440,000	944,240,000	
2	2,473	2,473	440,000	1,088,120,000	
계	4,619	4,619		2,032,360,000	

ii. 거래사례비교법

1. 개요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결정되는 가액임.

2. 거래사례의 선정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용도지역(이용상황)	단가(원/㎡)		거래가액(원)	거래시점
		건물			토지+건물	토지		
A	안녕동 188-28	답	3,379	자연녹지(답)	-	287,000	970,000,000	2016. 04. 22
		건물	-					
공장지대 위치하는 자연녹지 맹지 답								

거래사례 선정의견

위 거래사례는 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 동일수급권내 소재하는 사례로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 등 비교 유사성이 높은 위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사정보정치	1.00
결정 의견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구분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A	2016.04.22~2017.02.17	1.01855	화성시 녹지지역

5.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1.00
결정 의견	사례와 본건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6. 개별요인 비교

기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2	사례#A	1.00	1.07	1.10	1.00	1.00	1.30	1.530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봉담지구 등 주거, 상업지대와와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및 환경조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위치하여 장래동향 등 기타조건 우세함.

7.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가. 토지단가 산정

기호	거래가격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2	287,000	1.00	1.01855	1.00	1.530	447,255	447,000

나.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공부면적(㎡)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토지가액	비 고
1	2,146	2,146	447,000	959,262,000	
2	2,473	2,473	447,000	1,105,431,000	
계	4,619	4,619		2,064,69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토지가액의 산정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분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비고
토지	2,032,360,000	2,064,693,000	

2. 토지가액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본 평가의 토지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 ₩ 2,032,360,000.-

기호	공부면적(㎡)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토지가액	비고
1	2,146	2,146	440,000	944,240,000	
2	2,473	2,473	440,000	1,088,120,000	
계	4,619	4,619		2,032,360,000	

2. 결정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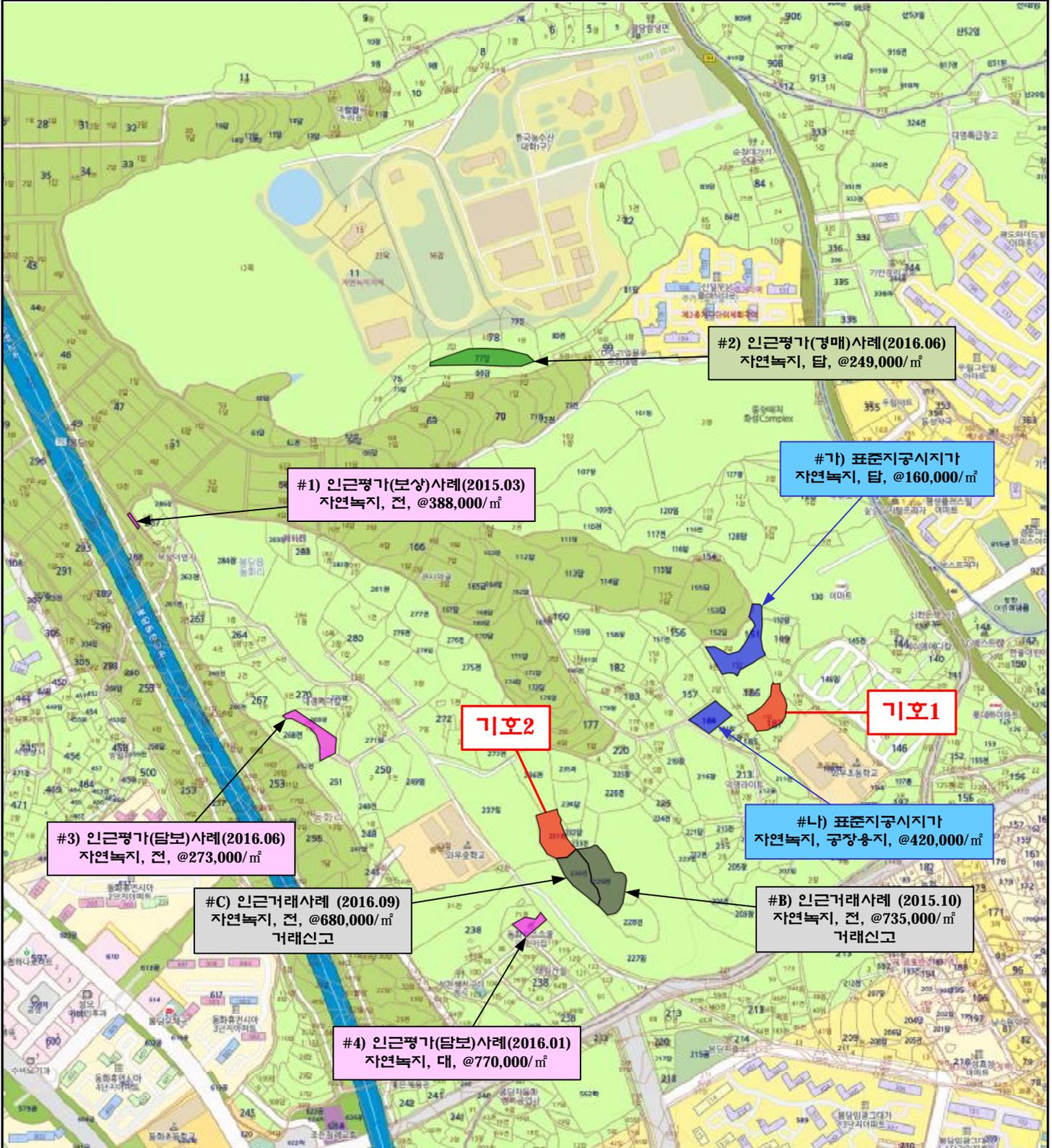
- ▶ 대상 부동산의 지리적 여건, 인근 주변상황, 이용상태 및 일반적인 수요성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환가성은 보통임.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금액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1	답	자연녹지지역	2,146	2,146	440,000	944,240,000	
2	동소 231	전	자연녹지지역	2,473	2,473	440,000	1,088,120,000	
	합계					\2,032,360,000.-		
		이	하	여	백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1 차**



각종사례 표시도	본 건	공시지가	경매평가사례	거래사례	평가사례
	■	■	■	■	■

지 적 개 황 도

지적개황도 S = 1 :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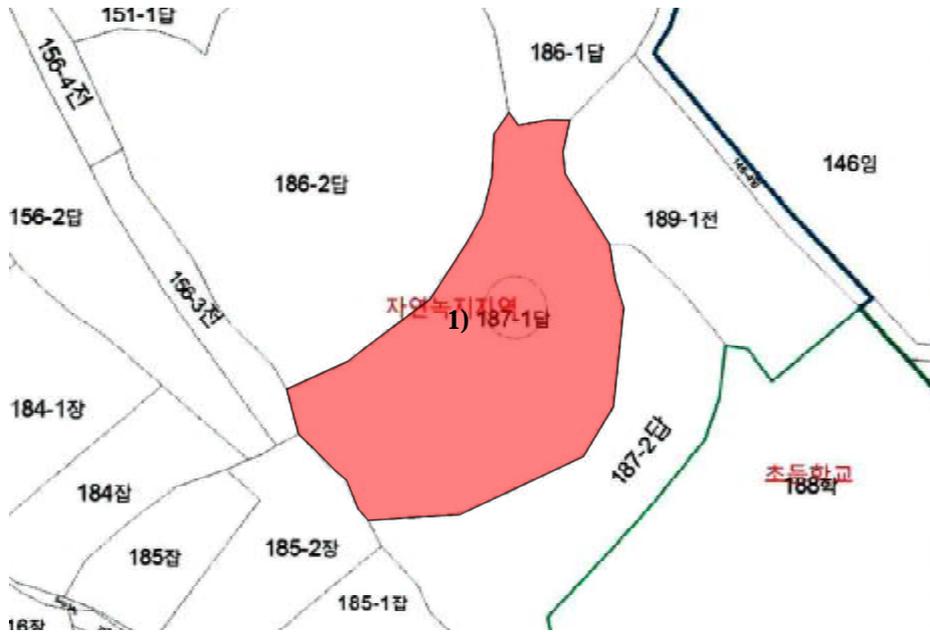


표 레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중물 및 부합물 (제시외)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

지 적 개 황 도

지적개황도 S = 1 : 1,400



판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2층
	 중물 및 부합물 (제시외)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

사진 용 지



기호1) 서측에서 촬영



기호1) 서측에서 촬영

사진용지



기호2) 북동측에서 촬영



기호2) 필지내 촬영

감정평가 보수료 청구서

(주)하나자산신탁 귀하(귀중)

감정평가서번호 : NC2017-0215-0010

一금이백이십육만육천원整 (\2,266,000.-)

의뢰문서번호 :

의뢰일자 : 2017-02-15

건명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1 외 소재 일반토지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가. 감정평가수수료	1,970,888	$((2,032,360,000 \times 8/10,000) \times 1.0) + 345,000 = 1,970,888$
나. 실비	토지조사비	0
	물건조사비	0
	여비교통비	81,700
	공부발급비	4,000
	특별용역비	0
	기타 실비	4,000
	실비 소계	89,700
소계	2,060,000	\1,000원 미만 절사
다. 부가가치세	206,000	소계 금액의 10%
합계	2,266,000	
기납부착수금	0	
정산청구액	2,266,000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의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아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신 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 우측 12자리 "17-0215-0010" 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124-85-25449

※ 송금처

하나은행. 동수원

416-165360-00104

(주)나라감정 경기지역본부

(주) 나라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헌태

(주) 나라 감정평가법인

주 소 : 우)167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615호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전 화 : 031)238-5600 전 송 : 031)231-1841

문서번호 : NC2017-0215-0010

시행일자 : 2017-02-22

수 신 : (주)하나자산신탁

참 조 :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보

선결			지시		
접	일	자	결재·공람		
수	시	간			
	수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우리 법인의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02-15자 귀 제 『 - 』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1 외 소재 일반토지』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감정평가서 2부
감정평가 보수료 청구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주) 나라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 헌 태